

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년 10월 14일 조례 제200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상권”이란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다.
2. “지역상생구역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.
3. “자율상권구역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.
4. “자율상권조합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.
5. “청년상인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2에 따른다.
6. “사회적경제 조직”이란 「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다.

제3조(지역상생구역의 기준)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”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.

제4조(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설립인가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정관
3. 사업계획서
4.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
5.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
6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
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
7.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

제5조(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.

1. 상시영업상인
2. 자율상권조합
3. 청년상인
4. 사회적경제 조직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 서식]

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

※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	
설립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고내용	설립동의자 수(명)	출자금 납입총액(원)	창립총회 개최일
법 인	조합명(연합회명)		법인등록번호
	소재지		
	이사장(회장) 성명		주민등록번호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

「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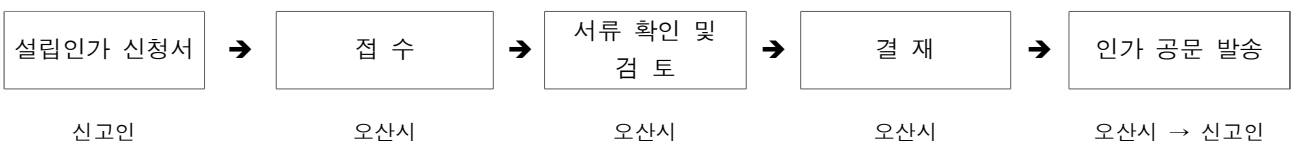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오산시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관 2. 사업계획서 3. 조합비 및 자체 자원 조달 및 집행계획 4.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.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